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성윤모 (산업통상자원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칩

1. 의결주문

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공장시설 신설·증설 등에 사용하는 경우를 외국인투자로 인정하고,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신청인이 허위·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등에는 그 지원을 취소·철회하거나 지원금을 감액·환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이 개정(법률 제16944호, 2020. 2. 4. 공포, 8. 5. 시행)됨에 따라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사용용도,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취소·철회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 처리의 편의를 위해 직접처리민원사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사용용도(안 제2조제7항 신설)

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공장시설·사업장 또는 연

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본
재·연구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를 외국인투자로 인정함.

나. 국가 안전유지 관련 외국인투자 관리 강화(안 제5조제1항제2호)

국가의 안전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관리를
강화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뿐만 아니라 정보수사기관의 장도 산업통
상자원부장관에게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
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, 검토 대상 외국인투자
에 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핵심기
술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추가함.

다.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기준 및 대상(안 제20조의2제1항 및
제5항제3호 신설)

현금을 지원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의 기준을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
의 30 이상인 외국인투자로 정하고, 현금지원 대상 외국인투자에 첨단
기술 또는 첨단제품 등을 연구개발함으로써 국내산업 및 기술발전에
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함.

라.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취소·철회 등의 사유(안 제20조의4 신
설)

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을 취소·철회하거나 그 지원금을 감액·
환수할 수 있는 경우를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을
신청한 경우, 현금지원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, 투자 대
상 법인·기업의 부도 등으로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로 정함.

마. 외국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범위 확대(안 제25조제1항제2호사목부터 자목까지 신설)
외국인투자 유치 촉진을 위하여 외국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의 범위에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「공연법」에 따른 공연장 또는 「스포츠산업 진흥법」에 따른 스포츠산업진흥시설 등을 설치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를 추가함.

바. 외국인투자지역 내 입주계약 체결 및 해지(안 제26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)

1)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되, 산업단지가 아닌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지역 내 부지·건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.

2) 관리기관은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해당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.

사. 직접처리민원사무 추가(안 별표 3 제13호 신설)

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 중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 파견된 공무원 등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의 종류에 「출입국관리법」에

다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·열람 사무를 추가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10. 4. 10. ~ 5. 20., 7. 7. ~ 7. 13.) 결

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아니하게”를 “않게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대한민국법인(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”을 “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(법인의 경우에는 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”을 “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8항(중전의 제7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”을 “법 제2조제1항제4호마목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2항(중전의 제11항) 중 “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”을 “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”으로 한다.

⑦ 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에서 “공장시설 신설 또는 증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공장시설(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

증설하는 경우

2. 해당 기업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를 구입하는
경우

제5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주무부장관”을 “주무부장관 또는
정보수사기관의 장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에 5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
다.

5) 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
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

제5조제5항 중 “주무부장관”을 “주무부장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”으
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“제7항”을 “제8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
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
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
를 검토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무부장관 또는 정보수사기
관의 장에게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이나 자
료를 외국인투자위원회에 보고 또는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제5조제8항(종전의 제7항) 전단 중 “주무부장관”을 “주무부장관 또는 정
보수사기관의 장”으로, “결정하여야”를 “결정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9
항(종전의 제8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7항”을 “제8항”으로, “공표하여
야”를 “공표해야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제7항”을 “제8항”으로 하
고, 같은 조 제10항(종전의 제9항) 본문 중 “제7항 전단”을 “제8항 전단”

으로, “양도하여야 하고, 제7항 후단”을 “양도해야 하고, 제8항 후단”으로, “양도하여야 한다”를 “양도해야 한다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 후단 중 “법 제18조제5항”을 “법 제18조의3제1항”으로 한다.

제7조제7항 중 “기존주식등”을 “주식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“기존주식등”을 각각 “주식등”으로, “명하여야”를 “명해야”로 한다.

제19조제3항 중 “제20조의2제3항”을 “제20조의2제4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3조제7항”을 “법 제13조의2제1항”으로, “공장시설(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”을 “공장시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3조제7항”을 “법 제13조의2제1항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3조제7항제1호”를 “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”로 하고, 같은 호 가목2) 중 “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·부품을 생산”을 각각 “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소재·부품 또는 장비를 생산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법 제13조제7항제2호”를 “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 중 “법 제13조제8항”을 “법 제13조의2제2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9항 중 “법 제13조제7항 또는 제8항”을 “법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”으로, “하여야”를 “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0항 중 “법 제13조제9항”을 “법 제13조의2제3항”으로, “하여야”를 “해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3조제9항”을 “법 제13조의2제3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4항을 삭제한다.

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2(국유·공유재산의 매각) ① 법 제13조의3제2항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한 기업”이란 제19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.

② 법 제13조의3제2항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말한다.

③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입대금의 납부 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.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.

1.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경우: 1년의 범위에서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
2.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경우: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

제20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”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.

제20조의2제2항(중전의 제1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신축”을 “신설·증설, 연구개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”를 “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”를 “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”로 하

고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4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4조의2제1항제5호”를 “법 제14조의2제1항제6호”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이나 「산업발전법」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또는 첨단제품을 연구개발함으로써 국내산업 및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
제2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의4(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취소·철회·감액·환수 등)

- ① 법 제14조의2제5항에서 “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경우
2. 현금지원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
3. 계약기간 중 투자 대상 법인 또는 기업의 부도 또는 폐업 등으로 해당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

- ② 신청인에 대한 현금지원의 취소·철회·감액·환수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후 고시한다.

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아니한다”를 “않는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공장시설(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

업장을 말한다)”을 “공장시설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에 사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8조제10항”을 “법 제18조제5항”으로 한다.

사. 「공연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

아. 「스포츠산업 진흥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스포츠산업진흥시설

자.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

관 및 미술관 중 법인이 설립·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

제26조 및 제26조의2를 각각 제26조의2 및 제26조로 하고, 제26조의2(중전의 제26조)제1항 중 “법 제18조제5항”을 “법 제18조의3제1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제1항 및 제2항”을 “제1항부터 제6항까지”로, “외국인투자위원회가”를 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”로 한다.

③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(임대차계약을 포함하며, 이하 이 조에서 “입주계약”이라 한다)을 체결해야 한다. 이 경우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(이하 이 조에서 “산업단지”라 한다)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서의 입주계약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다.

④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지역(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제외한다)

내 부지 또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.

⑤ 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해당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,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없이 즉시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
 2. 입주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
 3. 임대받은 부지·건물 또는 시설을 임의로 매각, 대여, 교환하는 등 처분행위를 한 경우
 4.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
 5.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
 6. 1년 이상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
 7. 그 밖에 법률 위반 또는 입주계약상 중대한 의무위반으로 입주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⑥ 관리기관은 제5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.

제35조제1항제1호 중 “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”을 “법 제2조제1항제4호
마목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법 제18조제10항”을 “법 제18조제5
항”으로 한다.

제38조제2항 중 “라목”을 “마목”으로, “신청하여야”를 “신청해야”로 한
다.

제3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하여야”를 “해야”로 하고, 같은 항
제3호 중 “제26조의2”를 “제26조”로 한다.

제40조제4항 전단 중 “법 제18조제5항”을 “법 제18조의3제1항”으로 한
다.

별표 2의 제목 중 “제20조의2제3항”을 “제20조의2제4항”으로 한다.

별표 3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고,
같은 표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3.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	「출입국관리법」 제88조	즉시
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	----

별표 6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“법 제13조제1항”을 “법 제13조제1항
또는 제13조의3제1항”으로, “같은 조 제2항제1호”를 “법 제13조제2항제1
호”로 하고, 같은 호 다목의 위반행위란 중 “법 제13조제2항 본문”을 “법
제13조제2항 본문 또는 제13조의3제2항 본문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1호 중 “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4조의2제1항제4호”를 “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4조의2제1항제5호”로 한다.

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2제3항 중 “제20조의2제4항제1호”를 “제20조의2제5항제1호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2조(외국인투자 등의 정의) ① (생략)	제2조(외국인투자 등의 정의) ① (현행과 같음)			
②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 한다. 다만,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으로 등록한 후 주식이나 지분 (이하 “주식등”이라 한다)의 일 부 양도나 감자(減資) 등으로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<u>아니하</u> <u>게</u> 되는 경우에도 이를 외국인 투자로 본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않게</u> ----- ----- -----.			
1. 외국인이 <u>대한민국법인(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</u> 또는 <u>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 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 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 는 것</u>	1. ----- <u>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(법인의 경우에는 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</u> ----- ----- ----- -----			
2. 외국인이 <u>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 업의 주식등을 소유하면서 그</u>	2. ----- <u>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</u> ----- -----			

법인이나 기업에 임원(이사, 대표이사,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, 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로서 경영상 중요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것

③ ~ ⑥ (생략)

<신설>

⑦ 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외국인의 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전체 출연금 총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⑦ 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에서 “공장시설 신설 또는 증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공장시설(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

2. 해당 기업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

⑧ 법 제2조제1항제4호마목---

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출연하려는 비영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2. (생략)

⑧ ~ ⑩ (생략)

⑪ 법 제2조제1항제8호자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지급수단”이란 법 및 「외국환거래법」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등과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을 말한다.

제5조(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등)

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제한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

1. (생략)

2.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되는 외국인투자가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의 안전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(이하 “국가안보위해”라 한다)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⑨ ~ ⑪ (현행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와 같음)

⑫ -----

-----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-----

-----.

제5조(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등)

①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
주무부장관의 검토 요청으로
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
투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국
가안보위해에 해당하는 것으
로 결정한 사항

가. (생략)

나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
되는 경우

1) ~ 4) (생략)

<신설>

② ~ ④ (생략)

⑤ 주무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
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
해당 외국인투자의 신고를 한
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는 제1
항제2호에 따른 검토 요청을 할
수 없다.

⑥ 외국인은 법 제5조제1항부터
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
인투자 신고를 하기 전에 주무
부장관이나 산업통상자원부장

주무부장관 또는 정보수사기
관의 장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-----

1) ~ 4) (현행과 같음)

5) 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
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
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
핵심기술의 유출 가능성
이 높은 경우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주무부장관 또는 정보수사기
관의 장

⑥ -----

관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
고시하는 사항을 갖추어 해당
외국인투자가 제1항제2호 각 목
에 따른 검토 요청 대상에 해당
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
수 있다. 이 경우 외국인의 확인
요청은 제1항제2호, 제5항 및
제7항과 관련하여 외국인투자
신고로 본다.

<신 설>

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
항제2호에 따른 주무부장관의
검토 요청이 있는 날부터 90일
이내에 해당 외국인투자가 국가
안보위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
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에 따
라 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산
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안보

제8항

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
항제2호에 따라 국가안보위해
해당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 필
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무부장관
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국
가안보위해 해당 여부와 관련하
여 조사한 내용이나 자료를 외
국인투자위원회에 보고 또는 제
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⑧ ----- 주무부장관 또
는 정보수사기관의 장-----

-- 결정해야 -----.

위해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특정사업 부분의 분리매각이나 보안유지 준수 등의 조건을 붙여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.

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 지체 없이 해당 외국인의 주식등의 취득을 불허하거나 허용하는 통보를 하여야 하고, 국가기밀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.

1. · 2. (생략)

3. 조건의 내용(제7항 후단에 따라 조건이 붙은 경우만을 말한다)

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7항 전단에 따라 국가안보위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 해당 외국인투자로 이미 기업의 주식등을 취득한 외국인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, 대한민국법인 또는 국가안

-----.

⑨ ----- 제8항-----

----- 공표해야 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 제8항 -----

⑩ ----- 제8항 전단-----

보위해의 우려가 없는 외국인
(이하 “대한민국국민등”이라 한
다)에게 양도하여야 하고, 제7
항 후단에 따라 조건부 투자 허
용 결정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
상자원부장관이 해당 조건의 위
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
내에 해당 주식등을 대한민국국
민등에게 양도하여야 한다. 다
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
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
인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그
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⑩ (생략)

제6조(외국인투자 신고 등) ① (생략)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
5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
은 사항 중 차관의 조기상환(早
期償還)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
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지체 없
이 국세청장, 관세청장, 특별시
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
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
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알려
야 한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

----- 양도해야 하고, 제8항

후단-----

----- 양도해야 한다. -----

⑪ (현행 제10항과 같음)

제6조(외국인투자 신고 등) ① (현
행과 같음)

② -----

그 내용을 지체 없이 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 지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

제7조(외국인투자 허가 등) ① ~

⑥ (생략)

⑦ 제6항제2호에 따른 조건이 붙어 허가된 경우 해당 방위산업시설의 매각이 완료되기 전에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외국인은 해당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기존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법인에 양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양도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,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----- 법 제18조
의3제1항-----

-----.

제7조(외국인투자 허가 등) ① ~

⑥ (현행과 같음)

⑦ -----

주식등-----

-----.

⑧ -----

----- 주식등

----- 주식등-----

----- 명해야 -----.

-----.

제19조(국유·공유재산의 임대 등) ①·② (생략)

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”란 제20조의2제3항 및 별표 2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하며,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금액”이란 제2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금액을 말한다.

④ (생략)

⑤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.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.

1.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경우: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

2.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경우: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

⑥ 법 제13조제7항 각 호 외의

제19조(국유·공유재산의 임대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제20조의2제4항 -----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⑥ 법 제13조의2제1항 -----

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 공장시설(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설치하는 기업을 말한다.

1. 2. (생략)

⑦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국가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(「국유재산법」 제28조 및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이 정한다.

1. 법 제13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등: 다음 각 목에 따른 감면율

가.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100

- 1) (생략)
- 2) 제6항제1호다목의 사업

----- 공장시설 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⑦ 법 제13조의2제1항-----

-----.

1.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-----

가. -----

- 1) (현행과 같음)
- 2) -----

중 「소재·부품·장비
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
특별조치법」 제2조제1
호에 따른 소재·부품을
생산하는 사업(같은 법
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
· 부품을 생산하는 외국
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
임대하거나 분양하기 위
하여 조성한 법 제18조에
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
입주하는 사업만 해당한
다)

3) (생략)

나. ~ 라. (생략)

2. 법 제13조제7항제2호 및 제3
호에 해당하는 토지등: 해당
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
50

⑧ 법 제13조제8항에 따른 국가
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율은
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
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
이 정한다.

⑨ 법 제13조제7항 또는 제8항
에 따라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

----- 제2조제1
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소
재·부품 또는 장비를 생
산-----
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
따른 소재·부품 또는 장
비를 생산-----

--

3) (현행과 같음)

나. ~ 라. (현행과 같음)

2.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---

--

⑧ 법 제13조의2제2항-----

-----.

⑨ 법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
항-----

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(이하 이 조에서 “외국인투자기업등”이라 한다)는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⑩ 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⑪ 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
1. 2. (생략)

⑫ ~ ⑬ (생략)

⑭ 법 제13조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매각 및 임대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국유재산법」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----- 해야 -----
-----.

⑩ 법 제13조의2제3항-----

----- 해야 -----.

⑪ 법 제13조의2제3항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⑫ ~ ⑬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<신 설>

제19조의2(국유·공유재산의 매

각) ① 법 제13조의3제2항 본문
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
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한 기
업”이란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
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.

② 법 제13조의3제2항 본문에서
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
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
수의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말
한다.

③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
토지등의 매입대금의 납부 기일
연기 또는 분할 납부는 다음 각
호의 방법에 따른다. 이 경우 적
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
과할 수 없다.

1.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등의
경우: 1년의 범위에서 납부 기
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
에서 분할 납부

2.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
지등의 경우: 조례로 정하는
바에 따라 납부 기일 연기 또
는 분할 납부

제20조의2(외국인투자에 대한 현

제20조의2(외국인투자에 대한 현

금지원의 용도 등) <신 설>

①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공장시설의 신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.

1. ~ 5. (생략)

② 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·부품 및 장비”란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소재·부품 및 장비를 말한다.

③ 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별표 2와 같다.

④ 법 제14조의2제1항제5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외국투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금지원의 용도 등) ①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”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.

② -----
----- 신설
· 증설, 연구개발 -----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③ 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----

-----.

④ 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----

-----.

⑤ 법 제14조의2제1항제6호----

-----.

1. · 2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3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이나 「산업발전법」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또는 첨단제품을 연구개발함으로써 국내산업 및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
제20조의4(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취소·철회·감액·환수 등) ① 법 제14조의2제5항에서 “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경우

2. 현금지원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

3. 계약기간 중 투자 대상 법인 또는 기업의 부도 또는 폐업 등으로 해당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

② 신청인에 대한 현금지원의 취소·철회·감액·환수 등의

치하는 경우

가. ~ 다. (생략)

2.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

가. ~ 바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3.·4. (생략)

② ~ ⑫ (생략)

⑬ 법 제18조제10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.

1. ~ 6. (생략)

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가. ~ 바. (현행과 같음)

사. 「공연법」 제2조제4호에
따른 공연장

아. 「스포츠산업 진흥법」
제2조제3호에 따른 스포츠
산업진흥시설

자.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
법」 제2조제1호 및 제2호
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
중 법인이 설립·운영하는
박물관 및 미술관

3.·4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⑫ (현행과 같음)

⑬ 법 제18조제5항 -----

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⑭・⑮ (생략)

제26조(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)

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관리하는 기관(이하 이 조에서 “관리기관”이라 한다)은 지정계획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관리한다.

②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⑭・⑮ (현행과 같음)

제26조의2(외국인투자지역의 관

리) ① 법 제18조의3제1항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(임대차계약을 포함하며, 이하 이 조에서 “입주계약”이라 한다)을 체결해야 한다. 이 경우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(이하 이 조에서 “산업단지”라 한다)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서의 입주계약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다.

④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지역(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제외한다) 내 부지 또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

<신 설>

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.

⑤ 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해당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,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없이 즉시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

2. 입주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

3. 임대받은 부지·건물 또는 시설을 임의로 매각, 대여, 교환하는 등 처분행위를 한 경우

4.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

<신 설>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한다.

제26조의2 (생 략)

제35조(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) ① 외국인투자위원회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(이하 “실무위원회”라 한다)에 위임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한 법률」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

5.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

6. 1년 이상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

7. 그 밖에 법률 위반 또는 입주계약상 중대한 의무위반으로 입주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⑥ 관리기관은 제5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-----
-----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--.

제26조 (현행 제26조의2와 같음)

제35조(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) ① -----

--.

1. <u>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</u>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인정에 관한 사항 2. <u>법 제18조제10항</u>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변경 지정 및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3. ~ 5. (생략) ② ~ ⑤ (생략) 제38조(도입자본재등의 검토·확인) ① (생략) ② 제1항 각 호의 자본재 및 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<u>라목</u>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자본재가 아닌 물품(이하 이 항에서 “자본재등”이라 한다)을 도입하려는 자는 자본재등의 수량·규격·가격 및 제작자 등을 명시한 도입 물품명세서를 작성하여 「관세법」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 신고 수리 전까지 주무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검토·확인을 <u>신청</u>하여야 한다. ③ (생략)	1. <u>법 제2조제1항제4호마목</u>----- ----- ----- 2. <u>법 제18조제5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3. ~ 5. (현행과 같음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제38조(도입자본재등의 검토·확인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마목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신</u> <u>청해야</u> -----. ③ (현행과 같음)
---	---

제39조의3(규제의 재검토) ① (생략)	제39조의3(규제의 재검토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(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<u>하여야</u>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해야 -----.
1. 삭제	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제26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 기준 및 절차: 2015년 1월 1일	3. 제26조----- ----- -----
제40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~ ③ (생략)	제40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시·도지사는 법 제31조에 따라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업무를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5조의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.	④ ----- --- 법 제18조의3제1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⑤·⑥ (생략)	⑤·⑥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4072